

■ 법률 칼럼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1. 601 A 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현 이민법 아래에서는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 등으로 밀입국을 하신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시민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밀입국에 대해 불법성을 면제(601A)를 받아야 하고, 면제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또 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90년 초에 개정된 현행 이민법은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게 되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 요건

- 1) 이미 승인이 난 이민 청원서(Petition)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3) 601A 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미군 가족인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인 경우)

불법입국자라 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을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

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밀입국한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서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 주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밀입국자들 중에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인 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245 (j) 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2001년 4월 30일 전에 이민청원 (Labor Certification 포함)이 접수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그 청원이 승인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족, 고용인 등이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 경우에는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벌금 1,000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역류성 식도질환의 관리와 치료

역류성 식도질환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 살펴본 지난 칼럼에 이어서 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던 과거에는 역류성 식도질환이 흔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육식 위주의 기름진 음식과 더불어 과체중, 비만으로 인한 복부 압력의 증가로 식도 역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역류성 식도질환은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으로 생활습관 교정이 아주 중요한 치료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금연을 하여야 하고, 위 식도 역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카페인, 초콜릿, 매운 음식, 고지방 음식, 탄산음료)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잘 때는 상체 부위를 약간 높게 하고 딱 끼는 옷을 피하여야 합니다. 침대 머리쪽 다리받침에 작은 블록을 끼워 놓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쐐기(wedge)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쉽게 상체 부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눕는 자세를 피하고, 수면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도 복압을 낮추어 주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생활 치료 중의 하나입니다.

생활 습관 변화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류되는 위산의 농도를 낮추는 약물 중에 펩시드(Pepcid)등의 H2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오메프라졸, 넥시움, 텍실란트, 판토프라졸 등의 양성자펌프억제제(PPI)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PPI의 경우는 오랜 공복 후 복용할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로 하루 첫 음식을 먹기 30-60분 전에 복용하는 걸 권유합니다.

또한 PPI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는 것보다는 한 번 복용하면 2-4주간 매일 복용하는 것이 증상 조절이나 손상된 식도의 회복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PPI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와 기간에만 복용을 해야 합니다.

PPI는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12, 철분 등의 미네랄 성분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흡수 감소와 골분해 작용의 활성화로 인하여 골밀도의 감소 및 그로 인한 골절 위험도의 증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치매의 위험 증가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일관된 결과가 있지는 않지만 유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듯 PPI는 역류성 식도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지만 장기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기간만 복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약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상의를 통해 부작용이 적은 H2수용체 길항제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역류성식도질환의 관리와 치료에 중요한 것은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앞에 서술한 생활습관의 변화는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